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82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이종욱·임이자·김도읍
안철수·김은혜·김미애
안상훈·김상훈·박덕흠
배준영·이소희·최은석
권영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학대·방임, 은둔·고립,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학생의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학생 관련 자료 제공 근거가 불명확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보호자가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부족함.

이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석(이하 “장기 미인정결석”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정서적·신체적 안전 확보 및 학업 복귀에 필요한 상담·학습지원·심리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 제3항에 따른 지원 방안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및 해당 학생의 보호자와 면담, 가정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보호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 지원 방안, 면담 및 가정방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원 방안의 기준·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면담 및 가정방문 등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지원 및 조사·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6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한 보호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석(이하 “장기 미인정결석”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학교의 장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u>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정서적·신체적 안전 확보 및 학업 복귀에 필요한 상담·학습지원·심리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 제3항에 따른 지원 방안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및 해당 학생의 보호자와 면담, 가정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보호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 지원 방안, 면담 및 가정방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원 방안의 기준·방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③ (생략)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절차, 제4항에 따른 면담 및 가정방문 등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지원 및 조사·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

1. · 2. (생 략)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 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한 보호자</u>
3. (생 략) ②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